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0

발의연월일: 2024. 6. 28.

발 의 자:조정훈·최수진·박충권

조경태 • 박형수 • 김예지

이철규 • 유상범 • 권성동

박수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서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워 퇴직을 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 직장생활과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가많은 실정임. 2023년 고용노동부가 6개월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20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위반유형 1위는 육아휴직에 대한 불리한 처우였음. 특히, 육아휴직 후 퇴사를 종용하고 휴직을 연장할 경우 퇴사를 권유하는 사례도 드러나 육아로인한 경력단절의 환경에 놓이게 됨.

이에 육아를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 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신설).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9조의7(육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를 목적으로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재취업의 신청방법과 재고용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9조의7(육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
	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
	아를 목적으로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
	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
	는 경우 재고용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근
	로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
	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
	무에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재취업의 신청방법
	<u>과 재고용의 방법·절차 등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